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5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 
직제 일부 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<br>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<br>(행정안전부 소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5. .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·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(9급 1명)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(전문경력관 다군 1명)으로 조정하며,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17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81”을 “48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73”을 “474”로 하며,  
전문경력관 “9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특례)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[별표 1의2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대통령령 제0000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 
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)

|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|
| 총계              | 482 |
| 정무직 계           | 4   |
| 위원장(장관급)        | 1   |
| 부위원장(차관급)       | 3   |
| 별정직 계           | 1   |
| 5급 상당 이하        | 1 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| 474 |
| 고위공무원단          | 9   |
|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| 6   |
| 3급 또는 4급 이하     | 450 |
| 전문경력관           | 9   |
| 경찰공무원 계         | 3   |
| 경정 이하           | 3  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&lt;삭 제&gt;</u> |
| <u>제17조(평가대상 조직) ① 「행정<br/>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<br/>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<br/>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<br/>조직은 별표 3과 같다.</u><br>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<br/>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<br/>정한다.</u> | <u>&lt;삭 제&gt;</u> |

## 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관련)

| 직      급      별 | 현    행     | 개정안        | 증   감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총계              | <u>481</u> | <u>482</u> | +1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| <u>473</u> | <u>474</u> | +1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  |
| 전문경력관           | <u>9</u>   | <u>10</u>  | +1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  |
| ·               | ·          | ·          |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5 - 2368 |